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06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허 영·위성곤·박성준

임호선 · 전재수 · 박 정

이훈기 • 김영진 • 강훈식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조치결과(요구받은 조치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류"를 "서류등의"로, "거절한"을 "거부한 자,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에 대한 조치요구) (생 략)	에 대한 조치요구)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조치결		
	과(요구받은 조치사항에 따르		
	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		
	함한다)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u>한다.</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u>서류</u> 제출 요구를 <u>거절한</u> 자,	- <u>서류등의</u> <u>거부한</u>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	자,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		
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을 제출한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